

예산총칙

2015년도 본예산

제 1 조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877,331,643	26,319,949
일반회계	768,007,191	23,040,216
특별회계	109,324,452	3,279,734
공기업특별회계	83,449,645	2,503,489
상수도사업특별회계	39,438,907	1,183,167
하수도사업특별회계	44,010,738	1,320,322
기타특별회계	25,874,807	776,244
여수국가산업단지주변마을주민이주사업특별회계	5,757,917	172,738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5,259,519	157,786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1,563,153	46,895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3,146	94
도시개발사업비특별회계	2,336,548	70,096
주택사업특별회계	2,723,282	81,698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1,686,000	50,580
경영사업특별회계	170,000	5,100
공업용지조성사업위수탁특별회계	1,502,622	45,079
주차장특별회계	3,770,365	113,111
기반시설특별회계	1,102,255	33,068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 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와 같다.

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8,787,306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지방채차입 한도액은 15,200,000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제 7 조 회계년도 중에 용도가 지정되어 교부된 보조금, 특별교부세, 조정교부금등은 성립전집행하고 의회에 사후 보고한다.

제 8 조 최종 추경예산 성립 후 국가 등으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의거 명시이월로 간주처리 한다.